

中華民國 特許制度解説

〈中〉

基 拓 閣

<特許廳 研修擔當官>

—承 前—

2. 實用新案

(1) 登錄要件

1) 對 象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裝置로서 實用에 適合한 考案 일 것

2) 登錄要件

① 文獻에 의한 世界的으로 公知가 아닐 것

② 國내에서 公然히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試驗研
究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출원일 것)

③ 선원일 것

④ 外國政府에 출원한 것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이
내 출원일 것

⑤ 정부의 認可를 얻어 開催한 展覽會에 陳列한 物
品은 展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⑥ 출원전에 비밀히 大量生產되지 않을 것

⑦ 다음 不登錄事由에 該當되지 않을 것

 가) 그 사용이 法律에 違反하지 않을 것.

 나) 公序良俗에 反하지 않을 것

 다) 黨旗, 軍旗, 國家의 紋章, 熏章의 形狀과 同
一 또는 類似하지 않을 것

2) 存續期間

出願日로부터 10년

3. 意匠

(1) 意匠出願과 類似意匠

1) 物品의 形狀 模樣 또는 色彩에 대하여 美感을 일
으킬 意匠을 가장 먼저 考案한 者는 의장을 출원할 수
있다.

2) 類似의장이 同一人에 속할 때에는 聯合의장으로
출원하면 登錄할 수 있다.

(2) 登錄要件

1) 동일 또는 유사 의장이 世界的으로 公知가 아닌
것

2) 동일 또는 유사의 의장이 國내에서 公用되지 않
을 것

3) 동일 또는 유사 의장이 先登錄된 것이 없을 것

4) 다음 不登錄事由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①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衛生을 害하지
 않을 것
 ② 黨旗, 國旗, 國父의 肖象, 國家의 紋章, 軍旗,
 印章 또는 熏章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3) 存續期間

출원일로부터 5년

4. 商標

商標登錄業務는 원래 工商部 作屬의 商標局이 담당하
고 있었으나 中央政府가 大陸으로부터 移轉한 후 상표
국이 일시 解散한 관계로 經濟部에 그 업무가 委託되어
현재 그 직속기관인 中央표준국이 그 主管當局으로
서 登錄審查, 再審查, 取消, 異議등을 담당하고 있다.

(1) 審查制度

1) 심사는 中央표준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中央표
준국의 결정에 대하여不服이 있는 자는 60日 以內에
經濟部에 訴願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불복이 있는자는
行政院에 불복을 제기하고 여기에도 불복이 있으면 最
終的으로 司法院에다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으므로
結局 商標審查는 4審制度가 되는 셈이다.

2) 이 상표심사는 專利審查와는 달리 상표심사에 소
속되어 있는 3人의 전임심사관에 의하여 심사된다.
이 심사에 있어서는 出願書가 3인의 심사관에 順次의

으로 配布되어 3인이 각者 20日間씩 검토하여 結論은 내어 60일째되는 날에 3인이 合同會議를 열어 합의한다. 만약 3인의 意見이 一致하면 確定이 되지만 의견이 不一致할 때에는 上司를 包含하여 7인의 合議體가 다시 選成되어 그 합의체서 決定한다. 이 합의체에서 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이 合議體長이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拒絕의 경우에는 3인의 完全한 동의 및 합의가 없는限 7人合議體를 구성할 수 없다.

(2) 種類 및 登錄要件

1) 種類

聯合商標, 標章登錄制度는 있으나 團體標章, 防護権制度는 없다. 다만, 이 聯合商標에 대하여는 「同類似」同一商品에 대하여 그 品質을 區別하기 위한 一人的 商標」라고 定되어 있다.

2) 登錄要件

i) 先使用일 것 2인이 상이 동일 상품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였을 때에는 先使用하였고 또는 中斷없이 사용한 상표가 등록된다.

다만, 그 선사용의 立證을 하지 못한 적에는 비록 선사용 일지라도 先願者가 등록된다.

ii) 特別顯著性이 있을 것 : 法律에는 「商標와 文字, 圖型 또는 記號등이 結合하여 顯著한 것」으로 되어 있다.

iii) 不登錄事由에 該當되지 않을 것 : 불법은 다음과 같이 불등록사유를 明記하고 있다.

iv) 國旗, 國家의 紋章, 國書, 軍旗, 官印, 勳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v) 孫文 또는 中國元首의 肖象 또는 姓等과 동일 유사한 것

3) 標準國專用의 正字標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4) 赤十字章, 外國의 國旗, 軍旗와 同一 또는 유사한 것

5) 國際聯合의 名稱標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6) 公序良俗에 反하는 것 또는 大衆을 斯瞞할 염려가 있는 것(대중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意味는 여러 가지로 誤認混同이 포함되어 있다.)

7) 周知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 주지상표라는 것은 中華民國領土에 있어서 需要者 및 一般去來者에게 相當히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말한다. 주지상표로 認定되면 全商品에 대하여 効力이 미친다.

8)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與否判斷基準은 主華民國에서도 各國과 같이 「外觀稱號 및 觀念」등으로 판단한다.

(3) 公告期間

중앙표준국에서 發刊되는 「標準」誌에 公告한다. 公告期間은 3個月間이다.

(4) 異議申請

공고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存續期間 및 料金

1) 存續期間

10年이며 10년마다 更新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聯合商標은 原商標와 運命을 같이 한다,

2) 登錄料

(創設 및 更新 共히) 200元

(6) 商標權의 取消

1) 상표권은 營業의 廢止에 의하여 消滅된다. 또는 中央標準局長의 職權으로도 取消할 수가 있고 利害關係人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할 경우에는 書面審理가 원칙이며 口頭辯論같은 當事者 對審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不使用에 대한 立證責任은 取消申請人側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取消事由

i) 他人의 상표를 模倣하기 위한 目的으로 自己의 상표를 附記變更한 때

ii) 正當한 理由 없이 登錄日로부터 1年 以內에 사용하지 않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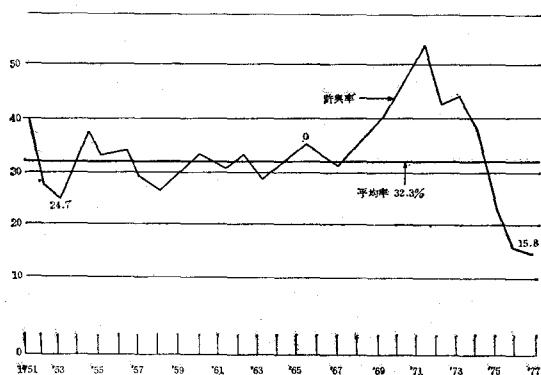
iii) 移轉日로부터 1년이내에 移轉登錄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다만, 相續은 除外)

iv) 使用許諾를 받은 者가 그 使用條件를 違反한 것을 알면서도 적당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때

v)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商品이 所管官廳의 檢查에 繼續하여 3回를 不合格한 때

다만, (2)의 경우는 聯合商標에 하나라도 사용하였으면 足하다.

그라프로 본 登錄查定率



年度別 專利案件出願件數 及 登錄查定件數比率

年 度	申 請			登 錄 查 定 件 數			登錄查定率(%)
	本 國 人	外 國 人	小 計	本 國 人	外 國 人	小 計	
1951	57	1	58	18	0	18	40.9%
1952	162	1	163	45	0	45	27.1%
1953	308	8	316	78	0	78	24.7%
1954	328	24	352	130	5	135	38.4%
1955	420	23	443	137	11	148	33.4%
1956	514	27	541	170	19	189	34.9%
1957	594	62	656	160	19	179	27.3%
1958	600	93	613	153	30	183	26.4%
1959	564	97	661	123	71	194	29.3%
1960	520	126	646	154	63	217	33.6%
1961	552	177	729	162	68	230	31.6%
1962	543	207	750	120	127	247	32.9%
1963	538	240	778	143	142	285	32.1%
1964	562	327	889	143	142	285	32.1%
1965	562	391	953	143	194	337	35.4%
1966	754	658	1,412	150	333	483	34.2%
1967	790	915	1,705	209	331	540	31.6%
1968	1,042	1,242	2,283	277	539	816	35.7%
1969	1,366	1,513	2,879	401	725	1,126	39.1%
1970	2,321	1,897	4,218	624	1,327	1,951	46.2%
1971	3,023	1,617	4,640	969	1,555	2,524	54.4%
1972	3,120	1,337	4,457	753	1,108	1,861	41.7%
1973	4,146	1,780	5,926	1,290	1,301	2,591	43.7%
1974	6,610	1,788	8,398	1,709	1,478	3,187	37.9%
1975	7,333	1,822	9,155	1,082	1,077	2,159	23.6%
1976	6,329	2,235	8,564	650	799	1,449	16.9%
1977	5,175	2,457	7,632	555	650	1,205	15.8%
總 計	48,893	21,064	69,957	10,548	12,054	22,602	32.3%

年度別 商標出願件數對 登錄查定件數比率

年 度	類別	登 錄 查 定 件 數	拒 絝 件 數	出 願 件 數	登 錄 比 率 (%)	1966	3,813	578	4,391	86.84%
1954		665	151	816	81.5%	1967	4,169	757	4,926	84.63%
1955		1,897	500	2,397	79.1%	1968	4,760	787	5,547	85.81%
1956		1,346	306	1,652	81.48%	1969	5,356	650	6,006	89.18%
1957		1,069	187	1,856	89.92%	1970	5,873	770	6,643	88.41%
1958		1,098	135	1,233	89.05%	1971	5,299	705	6,004	88.26%
1959		1,386	306	1,692	81.91%	1972	4,536	1,003	5,539	81.89%
1960		1,376	281	1,657	83.04%	1973	6,068	1,843	7,911	76.7%
1961		1,625	309	1,934	84.02%	1974	7,053	2,102	9,155	77.04%
1962		1,786	286	2,072	86.2%	1975	6,014	2,628	8,642	69.59%
1963		2,626	312	2,938	89.38%	1976	7,621	3,444	11,065	68.87%
1964		1,969	345	2,314	85.09%	1977	9,406	3,816	13,222	71.14%
1965		2,565	468	3,033	84.57%	總 計	89,976	22,609	112,645	79.88%

<列> <列>